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협의기구인 위원회를 신설하고 소통을 통한 민관협치를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teasuga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15조와 제16조로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4급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시설관련 국장 및 과장과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 수는 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한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 ④ 회의에 참여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u> <u>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u> <u>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u> <u>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u> <u>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u> <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u> <u>·운영할 수 있다.</u> <u>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u> <u>수립에 관한 사항</u> <u>2.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u> <u>사항</u> <u>3. 제8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u> <u>선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u> <u>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u> <u>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u> <u>로 구성한다.</u> <u>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u> <u>지사 등 처우개선 담당 국장이</u> <u>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u> <u>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u> <u>과 위촉위원으로 한다.</u> <u>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u> <u>천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u>

<신 설>

<신 설>

사회복지시설관련 국장 및 과
장과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
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 수는 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한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
는 의원
3. 그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
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
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u>제9조</u> (생략) <u>제10조</u> (생략)	<u>결한다.</u> ③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u> ④ <u>회의에 참여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⑤ <u>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u>제15조</u> (현행 제9조와 같음) <u>제16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
--	---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사회복지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의3(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제5조(조직 등)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

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행정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4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보건복지국 공감복지과장 고 태 성